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2. 3 선고 2018가단2270(본소), 2020가단14139(반소)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 선박건조대금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균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변 론 종 결 2020. 10. 8.

판 결 선 고 2020. 12. 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923,79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선박을 이용한 유,도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1호선 건조 및 공급

- 1) 원고는 2016. 8. 9. 주식회사 D을 대리한 피고와, 90톤급 관광유람선 1척(여객정원수 176명, 승선원 3명, 이하 '1호선'이라고 한다)을 대금 1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중 계약금은 3억 9,600만 원), 납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D이 이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호선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주식회사 D은 계약서 제5조에서 '사양서 및 도면은 원고와 주식회사 D 양자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되, 변경공사 및 추가공사로 인한 변경에 대하여는 추가 합의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고, 위와 같이 상호 합의한 공사변경 및 추가공사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가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 2) 원고는 2017. 2. 12. 피고와, 1호선 제작 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납기를 2017. 8. 31.까지로 연장하고, 선체 총톤수를 변경하여 총 톤수를 93톤으로 변경하였고(다만, 여객정원수와

승선원은 종전과 같다), 나머지 내용은 1호선 계약과 같이 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0.경 1호선 계약을 다시 변경하여 계약서(갑 제6호증의 3)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변경된 내용은 총 톤수를 106톤으로, 여객정원수를 170명으로, 중도금 지급시기를 확정된 날짜로 변경하는 것이고, 대금 등의 나머지 계약 내용은 종전과 같다.

4) 한편, 원고는 2017. 2. 16.부터 2017. 10. 19.까지 피고에게 총 5회에 걸쳐 1호선 건조 대금으로 1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5) 피고는 2018. 1. 3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1호선의 선박 총톤수를 측정하고, 2018. 2. 2. 'E'라는 명칭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8. 2. 6.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선박등록을 마친 후 2018. 2. 20.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 건조검사를 마쳐, 그 즈음 원고에게 1호선을 인도하였는데, 건조된 1호선은 2017. 2. 12. 변경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전장이 31.6m에서 32m로 0.4m 증가, 수선간장이 26.5m에서 27m로 0.5m 증가, 형폭이 6.8m에서 7.2m로 0.4m 증가, 총 톤수가 93톤에서 106톤으로 13톤 증가, 여객정원수가 176명에서 174명으로 2명 감소하였다.

6) 원고는 2018. 3. 3. 1호선의 수리를 위한 조선소 상가비용으로 385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2호선 건조 계약과 해제

1) 한편, 원고는 2017. 11. 1. 피고와 FRP 관광유람선 1척(이하 '2호선'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호선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당시 대금을 12억 6,500만 원으로, 납기를 2018. 4. 30.까지로 각 정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8. 피고에게 2호선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3억 7,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8. 3. 20. 2호선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금을 1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3. 20.까지 건조스케줄을, 2018. 3.

30.까지 계약금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증보험(보증서)을 각 제출하되, 위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중단되고, 2018. 4. 6.까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3억 7,950만 원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4)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피고가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건조스케줄과 보증보험 증권을 약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호선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7, 8, 9, 11, 2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부산지방법해양수산청장,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호선 계약의 해제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3억 7,950만 원에 1호선 수리를 위한 조선소 상가비용 385만 원을 더한 3억 8,335만 원에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호선 건조 잔금 1억 원, 2018. 3. 20.경 피고에게 1호선 건조보조금으로 더 지급하기로 한 1억 2,000만 원, 위 부가가치세 2,200만 원을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141,3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1호선 계약 체결 후 원고와 동종업체로서 거제시 F항에서 G, H로 유람선을 운항하는 I협회가 피고에게 95톤급 FRP 대형유람선(이하 ‘J유람선’이라고 한다) 3척의 건조를 의뢰한 것을 알고 피고에게, 이미 발주된 주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제원과 사양을 J유람선 3척과 동일하게 건조하여 달라고 구두로 요청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은 추후 정산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에도 J유람선의 제원이 변경됨에 따라 여러 차례 1호선의 제원 변경을 요구하여, 피고는 1호선과 관련하여 292,073,792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추가공사비에 미지급 대금 1억 원을 더한 392,073,792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2호선 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해야 할 계약금

341,150,000원(당초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3억 7,950만 원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3,45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외한 금액이다)과 1호선의 수리를 위한 조선소 상가비용 385만

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50,923,792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1호선 추가공사 대금 부분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가 있었다거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어려우며,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추가 공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감정인 K에 대한 감정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2020. 6. 23.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K은 2017. 1.경 작성된 일반배치도(을 제2호증), 2017. 3.경 작성된 건조사양서(을 제4호증)를 기초로 하여, 이를 최종 완성된 선박의 상태와 비교하여 추가공사비를 292,073,792원 상당이라고 하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9. 최초 1호선 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명의를 빌어 1호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 1.경 일반배치도(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으며, 2017. 2. 12.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피고는 그 후인 2017. 3.경 건조사양서(을 제4호증)를 작성한 후 2017. 3. 31. 선박안전기술공단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016. 8. 9. 작성된 최초 계약서와 2017. 2. 12.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한 계약서 모두 제1조 1항에서 ‘선박은 일반배치도에 따라서 건조하기로 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건조사양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이와 관련하여 감정인 K은 ‘위 건조계약 체결 과정은 일반적인 선박의 계약체결 과정과 달리 초기 협의 당시 기본사항을 확실하게 정하지 아니한 채, 일반배치도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건조사양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일반배치도(을 제2호증)가 1호선 계약의 한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건조사양서(을 제4호증)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1호선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건조사양서를 기초로 한 위 감정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는 피고 주장의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사실, 더 나아가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2) 피고는 '2017. 2.경 I협회로부터 95톤급 FRP 대형유람선 3척을 수주하여, 부산시 L에 있는 M 조선소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J유람선 1, 2, 3호선과 동시에 1호선을 건조했고, I협회의 요청으로 몇 차례 총 톤수가 변경되었는데, 1호선은 J유람선과 동일한 사양으로 건조되고,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자재비, 노무비, 경비 등을 선박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지출하지 않고, 4척에 대하여 동시에 지출하였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갑 제9호증,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FRP 재질로 선박을 만들 경우 선체는 하나의 형틀을 이용하므로 여러 척의 선박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고, 제조공정도 단순해지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도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4. 25. I협회에 3척의 총 톤수 95톤 급 FRP 관광유람선 건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이 각 1호선 건조대금보다 적은 12억 6,500만 원이고, 그 계약서 양식, 내용도 1호선 계약서와 비슷하다. 한편, 원고가 최초 계약시 정한 승선 승객수 179명을 굳이 170명으로, 그 후 177명으로 줄였다가 늘일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만일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추가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여러 차례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여 이를 변경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1호선 건조가 마무리 되어 갈 즈음인 2017. 11. 1. 원고와 2호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2호선 대금을 12억 6,5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 금액은 1호선 대금 13억 2,000만 원보다 적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2호선의 경우 1호선과 총 톤수가 비슷하여 이미 제작되어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선체를 제작할 수 있어 거푸집 제작비용이 들지 않고, 가격이 더 낮은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1호선보다 약 5억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적게 든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가 굳이 원고를 위하여 여러 차례 설계를 변경하면서 추가로 공사를 할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원고가 추가 공사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선박의 건조 과정, 계약서 변경 과정, 2호선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모아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 1호선의 제원이 변경된 것은

피고가 원고와 대략적으로 작성된 도면만을 기초로 우선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에서 본 선박 건조 과정에서의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1호선을 J유람선과 동일하게 건조할 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주로 피고의 이익을 위한 변경으로 보일 뿐,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1호선 계약 당시 ‘변경공사 및 추가공사로 인한 변경에 대하여는 추가 합의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고, 위와 같이 상호 합의한 공사변경 및 추가공사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가 정산’하기로 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 있다. 위 계약의 문언상 추가공사는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반면, 2호선과 관련하여서는, 계약 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서면(갑 제3호증)이 작성된 바 있다].

4) 원고와 피고가 2017. 11. 20.경 1호선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서(갑 제6호증의 3, 피고는 위 계약서가 세무관서에 제출할 용도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진정성립을 다투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다시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위 계약서에서는 총 톤수를 106톤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 건조된 1호선의 총 톤수와 같고, 대금도 종전과 같은 13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총 톤수 106톤의 선박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최초 총 톤수 93톤의 선박을 건조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2호선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2018. 3. 20. 합의한 건조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기재하고 있다. 위 내용증명 발송 당시는 2호선이 건조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는 1호선과 관련된 기재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당시 이 사건과 같은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위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2018. 3. 20.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1호선을 이미 인도받은 뒤이다.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1호선과 관련하여 2018. 3. 20.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피고와 1호선 계약과 관련하여 모든 대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나, 피고가 1호선의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함으로써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합의를 취소하므로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을 기초로 청구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소결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호선 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억 7,950만 원(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였고, 원고가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은 3억 4,5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지급받은 급부 전부라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된 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2호선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반환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에 1호선 수리를 위한 조선소 상가비용 385만 원을 더한 3억 8,335만 원에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호선 건조 잔금 1억 원, 건조보조금 1억 2,000만 원, 위 부가가치세 2,200만 원을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141,3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1,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8.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